

## 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함께하는 사랑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약관명에 구행명 삭제, 조항명 변경, 가입대상에 개인사업자 추가, 중복가입 불가 문구 삭제,  
문구 명확화

| 개정 전  | 개정 후   | 비 고   |
|---|--|---|
| <p><b>『함께하는 사랑 통장』 특약(구 하나은행)</b></p> <p><b>제 1 조 약관의 적용</b><br/>함께하는 사랑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」 및 「<u>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하나은행)</u>」을 적용한다.</p> <p><b>제 2 조</b><br/>(생략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<br/>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 및 법인</u>으로, <u>고객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, 타 수수료면제통장과 중복가입은 불가하다.</u></p> <p><b>제 4 조 이자지급</b><br/>(생략)</p> <p><b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<br/>은행은 개인가입자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한다)의 월별실적을 가입 다음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우대요건 중 1건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2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는 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, II를 제공한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다음월은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.<br/>1. ~ 2.(생략)<br/>3. 수수료 우대서비스II 대상거래 및 우대내용<br/><u>(월 10회 제공)</u><br/>가. ~ 다,(생략)</p> <p><b>제 6 조 기 타</b><br/>① ~ ② (생략)<br/>(</p> | <p><b>『함께하는 사랑 통장』 특약</b></p> <p><b>제 1 조 적용범위</b><br/>“함께하는 사랑 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<u>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</u>」 및 「<u>예금거래 기본약관</u>」을 적용한다.</p> <p><b>제 2 조</b><br/>(좌 등)</p> <p><b>제 3 조 가입대상</b><br/>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<u>실명의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</u> 또는 <u>법인</u>으로 <u>고객당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.</u></p> <p><b>제 4 조 이자지급</b><br/>(좌 등)</p> <p><b>제 5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</b><br/>은행은 개인가입자에 대해 아래에 명시된 수수료 우대서비스 대상요건(이하 “우대요건”이라 한다)의 월별실적을 가입 다음월부터 매월 평가하여 <u>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</u> 우대요건 중 1건 충족하는 경우 충족한 월의 다음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2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며, 우대요건 중 2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는 제2호 및 제3호의 수수료 우대서비스, II를 제공한다. 단, 신규 가입월 및 다음월은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우대서비스를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한다.<br/>1. ~ 2.(좌 등)<br/>3. 수수료 우대서비스II 대상거래 및 우대내용<br/><u>(총합 월 10회 제공)</u><br/>가. ~ 다,(좌 등)</p> <p><b>제 6 조 기 타</b><br/>① ~ ② (좌 등)<br/>(</p> | <p>구행명 삭제</p> <p>조항명 변경</p> <p>구행명 삭제</p> <p>개인사업자<br/>문구 추가<br/>중복가입<br/>불가 삭제</p> <p>문구 명확화</p> <p>문구 명확화</p> |

|  |  |  |
|--|--|--|
|  |  |  |
|--|--|--|